

##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

수신 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(검역시행장) 50여개소 귀하 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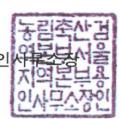
제목 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안전조치 등 협조 요청

- 1. 평소 수입 축산물검역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우리 사무소에서는 매년 시설물 및 주요업무별 유해·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 - ※ 관련규정: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- 3. 2025년 위험성평가 결과 수입축산물 검역업무 수행 시 아래와 같은 위험요인이 확인되어,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검역시행장 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해·위험요인	개선사항(협조)	관련규정
검역시행장 내 이동 및 현물검사 중 지게차·화물차와 충돌 위험	•지게차 작업 지휘자 배치	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(작업지휘자의 지정)
	∘보행자 통로 구획 및 현물	∘신업인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
	검사 장소 지정·구획 표시 - 검사진행중 입간판 설치 등	(통로의 설치)
	◦적재물의 무너짐, 떨어짐	∘신업인전보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
적재물 붕괴 및 냉동창고 천장	방지를 위한 조치	(화물의 적재) 및 동규칙 제182조(팔레트)
성에 낙하 위험	- 적재물 고정, 퍨레트 적정 교체	4
	∘천장 성에 주기적 제거	
검역을 위한 이동 중 계단 난간	•계단에 90cm 이상 높이의	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
미설치로 추락 위험	안전 난간 설치	(계단의 난간)
시행장내 이동 중 바닥, 계단	∘바닥 및 계단 주기적 습기	1
미끄러짐	제거(특히 하절기)	

끝.

## 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역본부용인



주무관 **박주희** 

주무관

문성익

용인사무소장 <mark>전결 2025. 6. 13.</mark> **정윤구** 

협조자 주무관 천현미

시행 용인사무소-2908 (2025.06.13) 접수

우 17023 ; 627도 -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

전화번호 031-327-0111 팩스번호 031-327-0197 / parkjhee@korea.kr

2/2